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70 발의연월일: 2022. 9. 15.

발 의 자:유기홍·강득구·강민정

김영호 • 도종환 • 문정복

민형배 • 박광온 • 서동용

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 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 부칙	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u><</u> 삭 제>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